

『한국민족문화』 편집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민족문화』(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편집간행,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편집위원회)

- ① ‘학술지’의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투고된 논문의 전공과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결과에 의거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은 한국학 및 그 인접학과와 관련된 제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각 학문영역별로 안배하고 소속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운데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③ 심사위원 3인은 관련 전문학자로서 하되, 가능한 지역 분포를 골고루 한다.

제5조 (간행 횟수)

‘학술지’는 매년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간행한다.

제6조 (논문 투고)

논문 투고는 “『한국민족문화』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7조 (논문 심사의 기준과 절차)

-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가 종합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 가운데 하나로 정하여 요청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한 논문이 “게재 불가”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제3심사위원	최종판정
A	A	A	게재
A	A	B	게재
A	A	C	수정 후 게재
A	B	B	수정 후 게재

A	B	C	수정 후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A	A	D	재심
A	B	D	재심
B	B	D	재심
A	C	C	수정 후 재심사
A	C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B	C	C	게재 불가
B	C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C	C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 “재심”의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 “재심”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의 결과가 1차 심사와 동일하거나 하나라도 낮게 판정 될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BBD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이하일 때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1차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논문을 2차 투고하지 않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④ 게재 판정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고 일부 논문은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보류된 일부의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논문심사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에게 심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때 심사요지를 첨부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한국민족문화』 연구윤리 규정을 두며, 이 규정을 투고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2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07년 9월 5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09년 3월 17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2월 15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발생한다.
9.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8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10.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0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11.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발생한다.
1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
1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민족문화』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한국민족문화」(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 연구노트, 서평 등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제정일 5년 이전부터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소의 책임과 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한다.

①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 ② KCI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에서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한다. 유사도 비율은 편집위원회가 내규로 정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②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투고자의 이전 논문,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⑤ 기타: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

제6조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 ① 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이 겸임한다.
- ③ 위원: 편집위원 3인과 연구소 외부 학자 3인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한국학 및 그 인접학문과 관련된 제분야의 전공자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

서를 포함하여 5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소 편집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투고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①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

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본조사: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 ③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

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9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연구성과물을 삭제하며, 연구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 DBPIA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향후 5년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10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구소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 ② 제보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 ④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따른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 2009.09.23.”에 따른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2월 15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8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민족문화』 투고 규정

1. 『한국민족문화』에 투고 가능한 논문은 한국학과 그 관련분야 논문 및 한국학의 세계화와 관련된 논문으로 한다.
2. 투고자는 아래의 사항을 주지해야 한다.
 - 1) 『한국민족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와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KCI, KERIS, DBPIA 등에 원문이 게시되므로, 이에 대해 투고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 2) 투고자는 『한국민족문화』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 3) 직전 간기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연속으로 투고할 수 없다.
3.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초록, 도표를 포함해서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편집본 기준 30쪽) 이내로 한다. 단, 150매 초과시 200자 원고지 5매당(편집본 기준 1쪽당) 5,000원을 필자가 부담한다.
4. 논문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접수할 수 있다.
 - 2) 논문 체제는, '논문 제목-필자명(각주: 소속(e-mail 주소))-차례 - 국문초록 - 국문 주요어(5개)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 초록(제목과 필자명도 영문) - 영문 주요어(5개)'로 한다.
 - 3) 국문초록은 500~600자 내외의 분량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5) 논문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집 스타일로 작성한다(편집 스타일은

연구소 홈페이지 ‘출판물’-‘학술지’-‘논문투고 관련규정’ 참조
(<http://pncc.pusan.ac.kr>).

- 6) 본문의 분류번호는 1, 2), (3), ④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2>로 표시하고, 자료는 <자료 1>: ○○○라고 쓴다.
- 8) 각주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 ① 저서: 저자 이름, 『책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다만 간행지역은 국내일 경우 생략한다.)
홍길동, 『춘향전 연구』, 남원출판사, 1998, 287쪽.
Liamou P. Unwin, *Calm in Japan*, Boston: Stronghope Press, 1986, pp.23~24.
 - ② 번역서: 원저자 이름, 원서 이름, 역자 이름, 역서 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 쪽수.
N. Fry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2, 330쪽.
 - ③ 논문: 저자 이름, 「논문 이름」, 『학술지 이름』 권(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 쪽수.
홍길동, 「춘향전의 사설구성원리」,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7, 123~125쪽.
성춘향, 「광한루 단상」, 『한국의 문화유산』,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부산대출판부, 1998, 235쪽.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3, September, 1985, p.639.
 - ④ 학위논문: 저자 이름, 「논문 이름」, 대학교 이름 학위논문, 발행년도, 인용 쪽수.
홍길동, 「조선시대 한글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23~125쪽.
 - ⑤ 신문: 『신문 이름』, 발행년. 월. 일.
『한겨레신문』, 1998. 3. 25.

- ⑥ 잡지 : 저자 이름, 「논문 및 작품 이름」, 『잡지 이름』 권(호), 발행년월, 인용 쪽수.

홍길동, 「춘향전 이본」, 『남원』 9, 1993.3, 287쪽.

- ⑦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또는 ‘위의 글(또는 *ibid.*)’ 등으로,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

위의 책, 1쪽.

홍길동, 앞의 책, 1쪽.

※ 사료(1차 자료)의 경우 완전 주석도 허용한다.

- ⑧ 漢籍 고서의 경우 다음의 예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論語』 卷1, 學而.

『英祖實錄』 卷51, 英祖 16年 6月 壬申(3日).

『高麗史』 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一然, 『三國遺事』, 瑞文文化社, 1996, 132쪽.

- ⑨ 같은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다음의 예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韓國 古代·中世 戶等制 研究』 (이하는 『戶等制』)

- 9) 참고문헌은 사료(1차 자료), 논저(단행본과 논문을 같이 씀), 기타 자료(구술자료, 인터넷자료 등) 순으로 작성하되, 각각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렬한다. 그리고 인용 쪽수는 생략한다.

- 10) 인터넷 자료는 검색일(연월일)을 기재한다.

부산대학교(http://www.pusan.ac.kr/uPNU_homepage, 검색일: 2021.05.10.)

5. 필자에게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6. 원고의 투고는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7.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09년 3월 17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7월 17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6년 9월 26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3월 1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8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9.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10.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5월 1일부터 발생한다.
11.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4년 8월 1일부터 발생한다.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http://ksi.jams.or.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차철욱(부산대)

편집위원: 고성만(제주대)

김 결(강릉원주대)

송기태(목포대)

유영미(부산대)

이행선(일본 마쓰야마대)

차윤정(부산대)

편집간사: 박수정(부산대)

권정원(부산대)

방미화(중국 연변대학)

오현석(부산대)

이승영(광운대)

정명중(전남대)

한국민족문화 93

발행일 2026년 3월 31일

발행인 문재원

편집인 차철욱

인쇄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전화 051)510-1932~3, 팩스 051)512-78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전화 051)510-1882, 팩스 051)581-5655

E-mail: pncc@pusan.ac.kr(행정실)

pncc2@pusan.ac.kr(편집위원회)

<http://pncc.pusan.ac.kr>

〈비매품〉

